

자녀수당 운영 지침

제 정 : 2026. 01. 20.

구 분		내 용
목 적		· 「보수규정 시행요강」 제18조의2에서 정하는 자녀수당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부합하여 정하도록 함
지급 대상		· 부양 자녀가 있는 직원(「직제규정」에 따른 본국직원 또는 「계약인력 운영요령」에 따른 계약인력)
신청 방법		· 별지의 자녀수당 지급 신청서와 아래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급여 담당 팀장 앞 제출 1.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. 각 1부. 2. 장애진단서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해당자에 한함) 1부.
부양 자녀의 범위		· 만 19세 미만의 자녀 · 만 19세 이상의 자녀 중 장애가 있는 자녀 · 부양 자녀의 범위에는 입양, 외국 국적 자녀를 포함한다. · 이혼 혹은 재혼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직원이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 자녀에 포함한다.
국내 근무 직원	지급 금액	· 첫째 자녀 월 50,000원 · 둘째 자녀 월 80,000원 · 셋째 이후 자녀 월 120,000원
	지급 및 소멸	· 출생·사망, 결혼·이혼, 자녀의 연령 초과 등 부양 자녀의 변동만 있는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한다. · 면직이 아닌 퇴직의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. · 채용, 휴직 등으로 인한 직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.
국외 근무 직원	지급 금액	· 국외 근무 직원의 자녀수당은 자녀 1명 당 월 60달러 - 2012.1.1.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0달러를 가산
	지급 및 소멸	· 국외 근무 직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, 자녀가 출생한 날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. · 퇴직, 본국으로의 전보, 자녀의 연령 초과 등 지급 요건이 상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.
중복 지급의 제한		· 자녀수당은 한 자녀에 대하여 중복 지급될 수 없다. · 신청 직원은 배우자의 중복 지급 제한 대상 여부 및 자녀수당 수혜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의 자녀수당 지급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

구 분	내 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기 중복 지급 제한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공무원,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직원 2)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, 지방공단 직원 3)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직원 4) 사립학교 교직원 5) 별정 우체국 직원 · 급여 담당 팀장은 배우자의 중복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, 배우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장애 인정범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·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제53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· 「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」 제40조 또는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」 제41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· 「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변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직원은 자녀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. · 직원은 거짓으로 자녀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하고,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자녀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. 이 경우, 지급 정지기간은 급여 담당 본부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1년 이내로 정한다.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외 근무직원의 자녀수당은 국외근무수당 지급지에서 지급하며, 현지통화 또는 원화로 지급 시 「보수규정시행요강」 제20조에 따른다. · 직원은 부양 자녀의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급여 담당 팀장에 신고하여야 한다. · 무급휴가 및 결근의 경우 「보수규정」 제4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른다. · 휴직자에 대한 자녀수당은 「보수규정」 제6조에 따른다. ·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자녀수당은 「보수규정」 제10조에 따른다. · 징계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, 「보수규정」 제11조에 따른다. · 대기발령 시 그 사유에 따라 월 급여 감액 비율과 동일하게 수당을 감액한다. ·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한다.

자녀수당 지급 신청서

신청 직원	성명	사번	직급	생년월일
	※ 특기사항 ③에 의거, 배우자의 자녀수당 수혜가 있음 / 없음을 확인합니다.			
	* 배우자가 자녀수당 중복 지급 제한 대상인 경우 반드시 작성			
	배우자 성명	배우자 소속기관명	배우자 연락처	자녀수당 수혜여부
				여 / 부
	* 배우자가 자녀수당 중복 지급 제한 대상(공무원·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직원, 공공기관 직원·지방공사 직원·지방공단 직원, 국가가 국립학교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직원·사립학교 교직원·별정 우체국 직원)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, 해당 기관에서의 자녀수당 수혜여부를 반드시 명기			
부양 자녀	자녀 성명	관계	생년월일	비고

※ 특기사항

- ① 부양자녀 중 「자녀수당 운영 지침」의 장애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명(장애 진단서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)을 명시
- ② "관계"란에 첫째 자녀 / 둘째 자녀 / 셋째 이상 자녀 중 하나를 기입
- ③ 「자녀수당 운영 지침」에 따라 배우자가 자녀수당 중복 지급 제한 대상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, 해당 기관에서의 자녀수당 지급여부를 반드시 명시

*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중복 지급 불가

본인은 허위의 방법(위③의 중복지급 포함)으로 자녀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토록 하는 관련규정과 자녀수당의 지급 대상 및 부양자녀의 기본 요건 등을 숙지하고 「자녀수당 운영 지침」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자녀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.

- 첨 부 : 1.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. 각 1부.
 2. (해당자에 한함) 장애진단서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.

년 월 일

신 청 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